

성인학습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24.05.2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성인학습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성인학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, 외부산업체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교외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활동에 대하여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성인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,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임용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가부동수(可否同數)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간 사업계획 수립·운영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3. 성인학습자 입학자원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사무) ① 위원회의 사무는 성인학습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.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